

## 2026년도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행계획을 「의료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 1. 응시자격

- 「의료법」 제5조, 동법 부칙(2007. 4. 11.) 제9조 또는 동법 부칙(2012. 2.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관련) 「의료법」 부칙(2023. 5. 19.)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2026년 8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해당 학위 등록을 필한 자(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 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 확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자격 확인 미비에 따른 불이익(응시결격으로 인한 응시제한 및 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 기준일은 시험 응시제한 결격사유의 경우 시험시행일로 하고, 면허 결격사유의 경우 면허증 발급 신청일로 합니다. 단, 법령상 결격사유 기준일이 정해진 경우 해당 법을 따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3]의 의사 국가시험 면제조항 관련,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다음 회차에 한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면제시험 포기 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2.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수수료	시험장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예정일	지역
2026. 5. 4.(월) ~ 5. 8.(금)	320,000원	2026. 6. 18.(목)	2026. 7. 18.(토) ~ 19.(일)	2026. 7. 30.(목)	서울(경기포함)· 부산·대구·광주· 대전·전북·제주

## 3. 접수방법

구분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li> <li>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서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li> </ul>
접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6년도 8월 졸업예정자) 소속대학에서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인터넷 접수 가능</li> <li>(기졸업자 및 외국대학 졸업자) 상기의 졸업예정자가 아닌 경우 별도 명단 등록 없이 인터넷 접수 가능</li> </ul>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href="https://www.kuksiwon.or.kr">https://www.kuksiwon.or.kr</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시원 별관 자격관리부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li> </ul>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계좌이체</li> <li>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li> <li>가상계좌 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함.</li> <li>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 부담임.</li> </ul> </li> <li>간편결제</li> <li>감면 자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시수수료 감면대상자는 결제 진행 과정에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li> </ul> </li> </ul>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로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기타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진파일: 276 × 354 픽셀 이상 크기</li> <li>* 3.5 cm × 4.5 cm, 200dpi 이상 크기</li> <li>*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200dpi설정 (600dpi 이상 권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진 1매(3.5 cm × 4.5 cm)</li> </ul>

#### 4. 응시원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제출 및 우편제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방문하여 응시원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응시원서 제출이 불가하니,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결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라.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방법)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 에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  
 ※ 응시 취소에 따른 환불기준 등 문의 : 고객센터(1544-4244)
- 마. 필기시험(컴퓨터시험(CBT))은 시험장 선택제를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1>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험장 선택제 운영방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원서접수 기간에 방문하여 응시원서 및 ‘면제시험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시험장을 선택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 작성 시 선택한 지역의 시험장으로 배정됩니다.
- 바. 시험장소 변경은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또는 전자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응시지역 변경	• (신청기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시험장소 공고 7일 전까지 • (신청방법)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 시험장 선택 및 변경 (동일지역 내에서만 가능)*	• (신청기한) 응시표 출력일부터 10일 이내 • (신청방법)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시험장) 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 응시지역 내에 시험장이 1개 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장으로 자동 배정됨.

※ 동일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변경은 동일지역 내 시험장이 2개 이상인 지역만 해당하며, 시험장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시험장 잔여좌석이 없을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음.

사. 장애인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부터 시험 10일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단, 점자 또는 음성지원컴퓨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 30일 전까지 신청 필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 감면을 신청한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구분	감면신청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수수료 결제 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전액 감면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 받지 못한 경우	• 별도 신청기간 내 개별 신청을 통해 응시수수료 감면 - 신청기간: 2026. 5. 4.(월)~ 5. 15.(금) - 세부 감면 절차는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

## 5. 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표

구분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	시험시간	1문제당 배점
제1일	1	1. 보건의약관계법규(20) 2. 의학총론(60)	08:30	09:00~10:45 (105분)	1점
	2	1. 의학각론1(80)	11:10	11:20~13:05 (105분)	
제2일	3	1. 의학각론2(80)	08:30	09:00~10:45 (105분)	1점
	4	1. 의학각론3(80)	11:10	11:20~13:05 (105분)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법률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시험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기준으로 출제**됩니다.

## 6. 합격자 결정방법

필기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함.

## 7. 시험응시 관련 유의 사항

가. PC를 이용한 컴퓨터시험으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시험(CBT)은 PC를 통해 답안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답안카드를 작성합니다.
- 응시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기기(PC)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시험실에서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방법 및 응시자 배부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방법	응시자 배부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를 이용한 컴퓨터시험</li> <li>• 기존 종이시험의 문제유형 및 멀티미디어 문제* 유형 일부 포함</li> <li>※ 음성,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이 혼합된 매체를 멀티미디어 자료라 하며, 멀티미디어 자료로 표현하여 다양한 시험 정보를 구성한 문제</li> <li>※ 멀티미디어 문제는 '9문제' 출제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어폰 (멀티미디어 문제풀이 시 사용)</li> </ul>

나. 컴퓨터시험(CBT)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동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여 국시원 유튜브(YouTube)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시험(CBT) 튜토리얼은 [국시원 홈페이지 - 시험정보 - 컴퓨터시험 - CBT - CBT 체험하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uksiwon.or.kr/CBT/index.html>)

(단, 튜토리얼 프로그램은 데스크톱 PC를 사용하는 실제 시험의 프로그램과 동일한 형태로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동되지 않거나 화면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문제 및 정답의 공개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로부터 5일간 공개(멀티미디어 문제는 제외)하며, 일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은 시험실 전면의 '시험문제 공개 및 합격자 발표 안내' 부착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라.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일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시험시간표 참조)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전체 교시 중 어느 하나의 교시에 응시하지 못한 응시자는 해당 교시 및 나머지 교시에도 응시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본인에게 배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2시간 이전에는 시험장을 개방하지 않아 시험장 입장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 준비물: 신분증, 응시표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신분증의 범위 >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운전면허증
  - 여권(만료일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대한민국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 위의 신분증 중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확인서비스 포함)도 인정

---

○ 응시표가 없는 경우, 시행본부에서 응시번호만 확인된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중에는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 밴드, 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도 휴대 및 사용이 불가하며, 만일 휴대 및 사용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 혹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도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화장실 이용 후에는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 교시 종료시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자. 컴퓨터 화면에 시험시간 및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기능 포함)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으로만 구성된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 가능합니다. 전자시계(스마트시계 포함)는 휴대가 불가하며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 중 고의로 시험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 '0점'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타. 뚜껑이 있는 음용수는 지참이 가능하며, 시험 종료 후 응시자 본인이 회수하여 최종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파. 시험실 내 응시자 개인물품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자는 개인 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 부정행위 및 응시자 준수사항

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답안카드, 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 시험기기로 작성하는 답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시험기기를 포함한다)를 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을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
  8.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

-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문제 또는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컴퓨터시험(CBT) 중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등)를 시험기기에 연결하는 행위
  1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 처리 지침」 등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합니다.

---

#### 응시자 준수사항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부정행위자의 기준 제10호의 물품 제외)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7. 실기시험 시행 중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낙서, 그림,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에 기록하는 행위
  8. 시험장에서 감독관 또는 다른 응시자 등 타인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피해를 주는 행위
  9.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

## 9. 합격자 발표 및 면허증 교부신청

가. 합격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
-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휴대폰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자에 한함)
  - ※ 국시원에서 실시하는 합격자 통보 외 무단으로 휴대폰 문자(SMS) 등을 유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나. 시험에 합격한 자가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가시험 합격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외국대학 졸업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허교부신청서, 의사 진단서, 유효한 면허증 사본을 각 1매씩 제출해야 하며, 외국에서 받은 면허의 유효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끝난 날부터 면허발급이 진행됩니다.

다. 합격자 사정은 채점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산채점 처리됩니다.

라. 본인의 성적은 합격자 발표 후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응시결격 사유가 확인되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본인의 답안카드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답안카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희망일 1일 전 18시까지 [국시원 홈페이지 - 면허·자격·증명서 - 답안카드 열람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는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휴대폰 문자(SMS)를 통해 안내됩니다.
  - ※ 답안카드 열람희망장소는 국가시험원 본원 및 시험센터 중 선택 가능
- 방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답안카드 열람희망 장소를 방문하여 ‘답안카드 열람신청서’를 제출한 후 답안카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중에는 복사, 사진촬영, 전자우편 전송 등은 불가합니다.

<별첨1>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컴퓨터시험(CBT) 시험장 선택제 운영방안 안내

<별첨2>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지침

마침